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경훈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 외 48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- 본 조례는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휴식 및 놀이를 즐기고,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.
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제22조의2항(도시공원 내 금주구역 지정)을 신설하여 시장이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에 따라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.

□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